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June 26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브라질: OECD 이전가격지침에 부합하는 이전가격세제 개정안, 대통령 서명 완료

브라질 이전가격세제의 중대한 변경사항

2023 년 6 월 14 일 브라질 대통령은 이전가격세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잠정법안(Provisional Measure) 1,152 호를 채택하는 법률 제 14,596 호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브라질 이전가격세제가 과거 공식(formula-based)에 기반한 방식에서 OECD 이전가격지침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이전가격세제 개정 연혁

브라질 정부는 2022 년 12 월 29 일 잠정법안(Provisional Measure) 1,152 호를 공개하였으며, 브라질 의회(하원 및 상원 모두 포함)는 이를 120 일 이내에 법안을 입법해야 합니다.

법안 공개 후, 브라질 세무당국(Receita Federal do Brasil, 이하 "RFB")은 세부이행 지침을 제공하는 첫번째 국가규범(Instrução Normativa)* 2,132 호를 발표했습니다.

하원(The Chamber of Deputies)은 2023년 3월 30일, 상원(The Senate)은 2023년 5월 10일 잠정법안 1,152호를 통과시켰으며, 2023년 6월 14일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최종법안은 브라질의 이전가격세제에 정상가격 원칙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을 규정하였고, 이는 무형자산, 금융거래 및 사업 구조조정 처리에 대하여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최종법안에는 잠정법안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저세율국에 소재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 한 공제 가능
- 세무당국은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차 조정을 수행할 수 없음
- 원자재의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됨(단, 거래의 사실관계 및 상황, 가치사슬 내 다른 그룹사 간의 기능, 위험 및 자산을 고려 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면 재고 가능)

이전가격세제 개정 이후 단계

RFB는 협의를 거쳐 근시일 내에 추가적인 세부 이행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RFB는 변경되는 이전가격세제를 조기에 도입(2023년 기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이전가격세제의 변화가 이익 배분(법인세) 뿐만 아니라 기타 간접세 및 거래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잠재적 위험, 기회 및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브라질과 관련된 사업모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조세포탈 방지를 위한 새로운 권고안 발표

글로벌 조세포탈 방지를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2023년 5월 5일 프랑스 공공회계부 장관(French Minister for Public Accounts)은 국제조세 및 관세 범칙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문서화 보고서 구비요건 강화(현재 연간 매출액 기준인 4억 유로를 하향조정)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무형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
 - 납세자는 만약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 받을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성실 납세자' 처벌을 받게 됨
-

- 프랑스 정부는 2027년까지 다국적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횟수를 25% 늘리고, 글로벌 조세포탈에 초점을 맞춘 특수 감사팀을 구성할 계획
-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전 세계 총 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 투명성을 강조하는 액션을 취할 것

상기 주요 조치는 2024 년 재정 법안(Finance Bill)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전 5862, 2023.04.06

제목: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차입금 거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결정유형: 재조사)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합작투자계약에 의해 정밀 평판 유리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2013.10.22. 기준 000가 청구법인 발행주식 8,808,731주(발행주식의 50%)를, CCC 주식회사가 7,512,165주(발행주식의 42.64%)를, 그 외 소액주주가 1,296,566주(발행주식의 7.36%)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주주들과 함께 합작투자계약관계의 종료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아래 (1)~(4)의 거래(이하 "쟁점전체거래"라 한다)를 거친 결과 2014.11.26. 000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게 되었음
 - (1) 000은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의 소액주주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1,296,566주를 000달러에 매입
 - (2) 청구법인은 2014.1.10. 000으로부터 000달러(이하 "쟁점차입금" 이라 한다)를 차입(만기 15년)하고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차입(이하 "쟁점차입금 거래"라 한다)함
 - (3) 청구법인은 2014.1.15. CCC주가 보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7,512,165주(이하 "쟁점자사주"라 한다)를 000달러에 매입하였고, CCC 주는 같은 날 000으로부터 000 발행우선주 1,900주를 000달러에, 000으로부터 000 우선주 400주를 000달러에 각 매입함
 - (4) 청구법인은 2014.5.12. 쟁점자사주를 전부 소각하였고, 000은 2014.11.26. 000에게 쟁점차입금에 관한 채권 및 소액주주로부터 매입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1,296,566주를 000원에 매도함
- 청구법인은 000가 쟁점차입금에 관한 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000에게 매년 위

차입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000 조세 조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쟁점차입금의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에 관한 원천세를 별도로 징수·납부하지 아니함

- 000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전 조사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쟁점차입금에 대한 2014년도 정상이자율이 4.18%라고 보아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정상이자율에 따른 이자의 귀속주체를 000가 아닌 000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조사에서는 000이 CCC주로부터 쟁점자사주를 매수하는 대가로 000 우선주를 지급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거래를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차입금 거래를 끼워 넣어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차입금 거래의 실체를 전면부인하여 2015년도 이자로 지급된 금액전부를 손금불산입 하는 한편 해당 금액이 전부 000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
-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정상이자분이 000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000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2%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18.5.16. 쟁점차입금에 대한 2015년 이자지급액 전부를 000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2018.6.1. 위 이자지급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하는 등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한편,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의 2016년도분 이자에 대해서는 000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
- 청구법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쟁점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차입금 거래(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를 거친 것으로 보아 위 차입금에 대한 2016년도분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000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청구법인 및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1) 쟁점전체거래는 「국세기본법」제 14 조 제 3 항의 적용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 청구법인은 자사주 감자를 목적으로 2014.1.10. 000 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2014.1.15. CCC주로부터 쟁점자사주를 매입하였고, 「상법」에서 정한	1) 청구법인 및 000 은 CCC 주와 합작관계 종료를 통한 이윤독점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CC 주와 주식교환거래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위하여 쟁점차입금 거래를 끼워 넣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 14 조 제 3 항에 따라 거래를

<p>절차를 거친 다음 2014.5.12. 이를 전부 소각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 거래 및 쟁점자사주 매입거래의 결과 실현된 '경제적 실질'은 쟁점차입금의 발생 및 쟁점자사주 소각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자본감소임. 그러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자사주와 000우선주 교환의 결과는 청구법인이 쟁점자사주를 보유하면서 쟁점차입금 채무가 없고 자본금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주식 교환'의 경제적 실질과 '쟁점차입금 거래 및 쟁점자사주 매입'의 경제적 실질은 재무구조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고,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정한 이자비용의 손금한도가 달라지는 등 세법 상 효과 측면에서도 다름. 결국, 양자의 경제적 실질은 확연히 다르므로 근본적으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은 불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차입금 거래 및 쟁점자사주 매입'은 쟁점자사주 소각을 통한 감자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 주장처럼 '주식교환'을 위한 우회거래 행위 내지 단계 거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음 - 나아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은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의 재구성을 의미하므로, 이는 쟁점자사주 소각 그 자체에 의하여 감소한 조세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이와 별개의 거래로서 자사주 매입재원을 '차입'한 거래에까지 위 규정을 확대적용하여 쟁점 2016년이자를 전부 000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음 	<p>재구성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라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은 'CCC주와 000 간의 000 전환우선주의 양수도거래' 및 'CCC주와 청구법인 간의 쟁점자사주 양수도거래'만으로 충분히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건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계획적으로 000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점, 같은 날(2014.1.15.) 000달라가 000에서 출발해 다시 000으로 귀속되어 실질적인 자금이동 없는 점, 역시 같은 날(2014.1.15.) 쟁점차입금 거래와 쟁점자사주거래 및 000 주식의 거래계약이 동시에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거래를 통해 000에게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른 손금산입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회피하였고, 000은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거의 면제받음으로써 국제적 이중비과세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비롯한 000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유발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회피수단으로서의 우회거래에 해당함
<p>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내유보금을 활용하지 않고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쟁점자사주를 매입·소각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자사주 소각 방식으로 합작투자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차입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감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감자를 주주의 권리로써 보장한 「상법」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세법이 이를 강요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부당하며, 자사주 매입대금을 유상증자로 조달할지 아니면</p>	<p>2) 청구법인을 비롯한 000 이 쟁점차입금 거래를 추가한 데에는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합리적인 사업목적을 찾아볼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은 쟁점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재원인 약 000 달러(약 000원)를 차입 없이 전액 부담할 수 있었고,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2~3%의 낮은 세율로 주식매수대금을 차입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다른 차입처에 대한 아무런 물색없이, 굳이 특수관계법인인

<p>차입금으로 조달할지는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세법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조세심판원도 외투법인인 내국법인이 유상감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임을 전제로 해당 차입금의 이자비용의 손금성을 인정하였음), 쟁점자사주의 소각은 CCC 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사주 소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p> <p>- 합작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식양수도 또는 자사주 소각(감자)의 방법이 있고, 주식양도인의 세부담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자사주 소각(감자) 방식이 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어느 방식의 거래를 선택하건 세부담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쟁점자사주 소각에 따른 조세회피는 상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주식의 양도거래 대신 감자거래를 택함으로써 절감된 조세는 양도인의 법인세 내지 증권거래세이지,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는 그와는 무관한 것임</p>	<p>000으로부터 8%라는 고율에 쟁점차입금 전액을 차입하였는바, 어느 모로 보나 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p> <p>-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거래가 기획·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한 역할이 전무하고, 이 사건 기본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000으로부터 쟁점자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 전부를 차입하도록 강제된 사실을 보면 쟁점차입금 거래에 청구법인이 의도한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p>
<p>3)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사청의 이 사건 조사 내용 및 처분청의 당초 2014 법인세 부과처분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결정내용과도 배치됨</p> <p>- 처분청은 당초 2014 법인세 부과처분에서는 쟁점차입금 거래 및 쟁점자사주 소각의 경제적 실질을 인정하고 다만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차입금에 대한 2014년도 이자 지급액을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이자라고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소득금액 변동통지는 그와 완전히 모순되게 쟁점차입금 거래 및 쟁점자사주 소각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함</p>	<p>3) 쟁점차입금의 이자는 000 이 CCC 주와 합작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자기비용으로 쟁점자사주를 인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므로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법인인 000 으로부터 8%라는 고율로 약 000 달러라는 금액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므로 통상성 요건도 흠결되었으며, 합작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지출된 이자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 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수익관련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바, 이 건에 「국세기본법」제 14 조 제 3 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p>
<p>4) 「법인세법」제 19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제 7 호는 “차입금이자”를 손금에</p>	<p>4) 청구법인 및 000 이 주식교환 거래로 달성하고자 하였던 경제적 목적은 청구법인에</p>

<p>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4 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할 수는 없고, 감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금의 사업관련성 역시 인정되고 있는바(000),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의 손금성을 부인할 다른 법률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음</p>	<p>대한 완전한 지배력의 확보였는데, 쟁점차입금 거래 및 쟁점자사주의 소각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000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쟁점차입금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끼워 넣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자사주를 소각한 것은 000이 행한 전체 거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 내부의 경영활동에 불과함</p>
--	---

판단

- 처분청은 쟁점전체거래가 사실상 CCC주 소유의 쟁점자사주와 000측의 000 주식의 교환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차입금 거래를 끼워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쟁점 2016년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이 000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언상 납세의무 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세법상 혜택이 부당하여야 한다고 보이는바, 쟁점 전체거래의 결과 청구법인의 자본이 감소한 사실 등을 보면 쟁점전체거래와 '쟁점자사주 및 000 주식의 교환 거래'의 실질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업들이 합작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방식이 「상법」에 위배된다거나 예외적인 방식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차입금을 통한 쟁점자사주의 매입 및 소각방식을 선택하였음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2013년 현금성자산 및 2014년 배당금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차입금으로 쟁점자사주를 취득한 것이 반드시 통상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시행령 제19조 제7호는 차입금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 거래를 조세회피를 위한 단순 끼워넣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쟁점 2016년이자의 손금인정 가능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쟁점차입금을 통한 쟁점자사주의 매입 및 소각이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인 000 간에 약정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8%의 이자율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위 8%의 이자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2016사업연도분 정상이자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 상의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03 관세

韓, 美에 "인플레이션감축법 핵심광물 조달금지 외국기업 명확히 해달라" 재무부에 의견서 제출

1)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개요

-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 Public Law No. 117-169; 이하 "IRA")은 2022. 8. 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 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습니다.
- IRA 는 ① 핵심광물과 ② 배터리 부품의 '미국산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3,750 달러(총 7,500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배터리 생태계'를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2) 핵심광물 요구 사항

- '핵심광물'이란 미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섹션 45X (C) (6)에서 정하는 알루미늄 등의 광물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핵심광물 가치비율'이 임계값 이상이어야 '핵심광물 요구사항'이 충족됩니다.
- 핵심광물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광물 또는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핵심광물의 비중이 2023년에 40%를 충족해야 합니다. 향후 2024년에는 50%, 2025년에는 60%, 2026년에는 70%, 2027년에는 80%를 충족해야 합니다.

3) 배터리 부품 요구 사항

- '배터리부품'이란 산업적, 화학적 및 물리적 조립 단계를 통해 결합된 하나 이상의 부품 또는 구성 재료로 제조 또는 조립되는 배터리의 구성요소를 의미합니다.
- 배터리부품에는 양극 전극, 음극 전극, 고체 금속 전극, 분리막, 액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배터리 셀 및 배터리 모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북미 지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배터리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50%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품 비중은 2024년과 2025년에는 60%, 2026년에는 70%, 2027년에는 80%, 2028년에는 90%, 2029년에는 10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4)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 요청 사항 ('23.6.18)

-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요청 내용은 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상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 IRA는 법에서 외국 우려 기업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의 규정을 원용했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어, 전기차 업계에서는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고려하면 중국산 핵심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의견서에서 정부는 IRA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 더 많은 핵심광물 수출국을 FTA 체결국 명단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는 "미국과 FTA를 발효한 21개 국가의 현재 핵심광물 공급 능력은 IRA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더욱이 핵심광물 채굴 장소는 고정돼 있으며 일부 핵심광물은 매우 특정한 지역에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주요 공급처인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 정부는 또 투자기업의 불확실성이 대부분 완화됐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핵심광물과 배터리부품의 정의, 채굴과 가공의 차이, 가공 과정에서 부가되는 가치의 산정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

[KPMG 의견]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의 적격 친환경차 구매 시 연방 소득세액 공제와 관련한 지침(Section 30D)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지침은 2023. 4. 18. 부터 적용 중이며, 2023. 6. 16. 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확정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대상기업의 개념 등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으며, 동 지침도 60 일 의견수렴 이후 추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 재무부는 향후 우려대상기업에 대한 지침 등 IRA 의 집행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주요 공급처인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에 포함하는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 배터리 기업이 공급망을 설정하기 위하여 IRA 에서 정하는 외국 우려기업을 명확하게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산업 관련 기업은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현 Section 30D 지침의 변경 및 확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IRA 규정의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의 공급망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